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10. 7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7. 10. 7
- 다. 상정일자 : 97. 10. 22 (제5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자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나. 개정사유

- 우리군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상위법령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동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15조는 수수료를 적용 내용이므로 동법 제16조의 사용료로 개정함이 타당함.

다. 주요내용

-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 제3조 제1항의 온천수 공급에 따른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온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여 공동 급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동조례 제12조의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온천법 제16조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있음.

3.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생 략"

첨 부 :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 끝.

화순군온천수관리주례중개정조례안(안)

의 안 번 호	97 - 117
------------	----------

제출일자 : 1997. 10. 7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온천법 개정으로 인하여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로 개정 (안 제3조)
-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온천법 제16조"로 개정 (안 제12조)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 위임하여 공동 급수 할수 있다"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여 공동 급수 할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중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온천법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온천수공급) ① 온천수의 공급은 온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동 급수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다만 온천수의 보존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 위임하여 공동 급수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2조 (사용료) ① 온천을 공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p> <p>② (생략)</p>	<p>제3조 (온천수공급) ① - - - - -</p> <p>-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여 공동급수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 (사용료) ① - - - - -</p> <p>- - - - 온천법 제16조 - - - -</p> <p>- - - - -</p> <p>- - - - -</p> <p>② (현행과 같음)</p>